- 프로판특소세 폐지 발의 -

(백승홍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75

발의연월일 : 2003. 9. 25
발 의 자 : 백승홍 의원
찬 성 자 : 34인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LPG)중에서 프로판은 80년대 도입 초기에는 부유층에서 취사 · 난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급연료로 분류되어 과소비로 인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에는 프로판이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으며 2002년말 현재 영세서민을 포함한 793만세대가 사용하는 서민 연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장려정책으로 도시가스가 시장에서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와 프로판의 국제도입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영세서민들의 생활연료인 프로판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법률 제 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1條(課稅對象과 稅率) ① (생 략) ②特別消費稅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당해 각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마.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바. ~ 아. (생 략) ③ ~ ⑪ (생 략)	第1條(課稅對象과 稅率)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바. ~ 아.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백승홍 의원 프로판 특소세 폐지를 위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2003년 10월 14일(화) 국회 산자위 백승홍 의원은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된 특별소비세법은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액화석유가스(LPG) 중에서 프로판은 도입 초기에는 주로 부유층에서 취사 · 난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급연료로 분류되어 과소비로 인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1983년부터 특소세를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별첨1:특별소비세법 제정이유 및 현행 과세대상 물품)

이에 프로판에 부과되는 kg당 40원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34인의 찬성으로 발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로판은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일부 영세서민들은 취사 및 난방용으로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지만 지형적 요건이나 기술적 여건과 주택의 소유관계 여부로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별첨2:LNG/LPG 가격구조)

이제는 시대상황이 바뀌어 대규모 아파트에 사는 다수의 중산층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판은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어 더 이상 사치성 물품이 아님에도 아직까지 kg당 4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LPG에 대한 특소세부과 내역을 보면 2002년 총7,474억원중 프로판은 1,287억원이 부과 되었고, 부탄은 6,187억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별첨3: LPG 제세부과(징수)금 내역)

이에 백승홍의원은"프로판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특소세가 폐지되면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프로판 가스 1통(약20kg)에 800원 이상의 가격인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1:특별소비세법 제정이유 및 현행 과세대상 물품
#별첨2:LNG/LPG 가격구조
#별첨3:LPG 제세부과(징수)금 내역
#별첨4: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별첨1:

특별소비세법 제정이유 및 현행 과세대상 물품

□ 특별소비세법 제정이유

○제4차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임.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로 대별하여 사치성물품 및 행위와 소비억제물품 · 내구소비재등 최종소비재로 함.

□ 1976년 12월 12일 제정 법률 제2935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발췌

○경기발전 초기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수입 및 소비의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방어기능 수행

□ 석유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환경오염억제, 교통혼잡에 대한 비용부담, 에너지 과소비억제 측면 등의 목적으로 과세하고 있음

<현행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

과세품목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투전기 · 오락용사행기구	20%	30%	10%
골프용품 · 수렵용 총포류			10%
모터보트 · 요트			-
수상스키용품			-
영사기 · 촬영기			-
공기조절기(에어컨)	16%		-
프로젝션TV · PDP TV	8%	30%	-
※ PDP TV에는 한시적으로 잠정세율 적용(현행 0.8%)			
녹용 · 로얄제리	7%	30%	-
향수류			10%
보석 · 귀금속	20%	30%	-
고급사진기			-
고급시계			-
고급모피			10%
고급융단			-
고급가구			10%
-2,000cc 초과 자동차	10%	30%	-
-2,000cc 이하 자동차	5%		-
등유	131원/ℓ	15%	-
중유	9원/ℓ		-
부탄	297원/kg		-
프로판	40원/kg	-	-
LNG	40원/kg	-	-
부생연료유	96원/kg	15%	-
경마장	5백원	30%	-
투전기시설장소	1만원		-
골프장	1만2천원		30%
카지노	5만원		-
경륜장	2백원		-
유흥주점	10%		-

※ 석유제품 중 휘발유, 경유에는 교통세 각 572원/ℓ, 261원/ℓ 부과

#별첨2: **<LNG/LPG 가격구조 2003 8월 1주 기준>**

구분	부과기준	LNG		LPG			비고
		서울 (₩/㎥)	목포 (₩/㎥)	프로판 (₩/㎥)	부탄 (₩/kg)	부탄 (₩/ℓ)	
LNG도매요금/수입사공급원가		464.21	464.21	520.80	884.52	516.56	
도입비(원료비)		263.76	263.76	345.69	345.10	201.54	*공급원가 원료비 비율 -LNG:57%, 프로판:66%, 부탄:39%
제세공과금		85.85	85.85	97.11	461.13	269.30	*공급원가 세금비율 LNG:18%, 프로판:19%, 부탄:52%
-특별소비세	LNG:40원/kg 프로판:40원/kg 부탄: 203원/kg	32.31	32.31	40.00	297.00	173.45	*부탄의 경우 '06년까지 매년 단계별 인상
-교육세	특소세의 15%	-	-	-	44.55	26.02	
-관세	LNG:CIF×1.0% LPG×1.5%	2.54	2.54	5.26	5.26	3.07	
-판매부과금	25,952원/톤	-	-	-	29.41	17.17	
-수입부과금	9,750원/톤	7.88	7.88	-	-	---	
-안전관리부담	LNG:3.9원/㎥ LPG:4.5원/kg	3.9	3.9	4.50	4.50	2.63	
-부가세	10%	39.22	39.22	47.35	80.41	46.96	
최종소비자가격		509.69	615.49	942.58	987.89	576.93	

* LPG 최종소비자가격은 석유공사 가격 모니터링 참고('03. 8월1주 전국표본평균)
* LNG 소비자가격은 주택(개별)난방용 요금기준
* 부탄은 충전소 가격임

#별첨3: **<LPG 제세부과(징수)금 내역>** (단위:억원)

	2000			2001			2002		
	프로판	부탄	계	프로판	부탄	계	프로판	부탄	계
특별소비세(부과)	1,420	1,433	2,853	1,316	2,744	4,060	1,287	6,187	7,474
교육세(부과)	-	-	-	-	412	412	-	928	928
LPG판매부과금(징수)	-	-	-	-	280	280	-	883	883
안전관리부담(징수)	192	85	277	193	109	302	196	108	304
관세(부과, 추정)	149	63	212	147	67	214	145	76	221
합 계	1,761	1,581	3,342	1,656	3,612	5,268	1,628	8,182	9,810

참고)

<연도별 부탄 특소세 등 인상계획>

	종전	'01. 7	'02. 7	'03. 7	'04. 7	'05. 7	'06. 7
· 부탄 특소세 등(원/kg)	40	150	259	371	483	592	704

* 2004년 이후는 잠정세액이며, 프로판은 종전(40원/kg)과 같이 변동 없음